



KFA
Korea Football
Association

국제위원회 규정

Play ON



TABLE OF CONTENTS	Page
제1장 총칙	2
제1조 목적	2
제2조 적용범위	2
제3조 정의	2
제2장 기능 및 권한	3
제4조 기능	3
제5조 권한	3
3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	4
제6조 위원회 구성	4
제7조 위원의 위촉 등	4
제8조 위원의 해촉	4
제9조 회의의 구분 및 소집	5
제10조 위원의 직무	5
제11조 의사정족수 등	5
제12조 긴급한 업무처리	5
제13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	5
제14조 의무사항	6
제15조 의사록 및 기록 관리	6



1장 총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대한축구협회(이하 “협회”) 정관 제 56 조에 따른 국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위원회가 국제경기대회 유치, 국제교류, 국제관련 시설 및 운영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·심의하도록 하고, 이를 통해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및 한국 축구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이 규정은 국제위원회의 모든 활동에 적용하며, 이 규정과 관련 법령,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대회 관련 규정 또는 협회 정관(이하 “상위 법규”)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상위 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한다.

제 3 조 (정의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국제경기대회”란 「국제경기대회 지원법」 제 2 조 제 1 호에 정의된 대회,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대회 및 아시아축구연맹(AFC), 동아시아축구연맹(EAFF)에서 주최하는 대회를 포함한다.
2. “대회관련시설”이란 「국제경기대회 지원법」 제 2 조 제 2 호에 정의된 시설로, 경기장, 연습장, 선수 숙박시설, 관중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.
3. “유치신청”이란 협회,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최 예정 단체가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사를 관계 기관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.



2장 기능 및 권한

제 4 조 (기능)

국제위원회는 협회 정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국제관계 업무의 기본 방향 수립 및 조율에 관한 사항
2. 국제대회 유치 검토 및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
3. 국제기구 선거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
4. 다양한 분야의 국제전문가 활용을 통한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
5. 국제축구단체(FIFA, AFC, EAFF 등)와의 협력 및 교류 확대를 위한 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
6. 협회가 유치 신청하는 국제대회의 개최후보도시 선정 시 심사에 관한 사항
7. 국제축구 관련 기구, 단체 및 주요 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
8. 그밖에 국제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

제 5 조 (권한)

국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.

1. 국제대회의 유치 타당성 검토 및 협회 이사회에 유치 제안
2. FIFA, AFC, 대륙연맹, 아시아 내 지역연맹 및 각국 회원협회 등과의 협약 체결 검토
3. 국제교류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감독
4. 기타 국제적 사안에 대한 정책 제안 및 자문



3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

제 6 조 (위원회 구성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 1 인과 부위원장 및 7 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.
- ②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인사 중에서 임명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며, 연임 가능하다.
- ④ 국제대회의 유치 신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한 경우 해당 지역 또는 관련 행정 전문 인사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.
- ⑤ 위원회에 간사 1 명을 두며, 협회 직원이 담당한다.

제 7 조 (위원의 위촉 등)

- ①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
 - 1. 국내외 축구 또는 체육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자
 - 2. 국제관계 업무 수행에 있어 윤리적, 도덕적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② 정관 제 29 조 제 2 항 제 2 호부터 제 5 호까지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 8 조(위원의 해촉)

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 다만, 제 5 호 및 제 6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.

- ①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- ②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- ③ 제 14 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- ④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⑤ 제 13 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- ⑥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


제 9 조 (회의의 구분 및 소집)

- ① 국제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된다.
 - 1. 정기회의: 연 2 회 또는 협회가 정한 일정에 따라 개최
 - 2. 임시회의: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소집 또는 위원 과반수 요구 시 소집
- ② 회의 소집 통보는 최소 회의 개최 7 일 전까지 서면 또는 이메일로 위원들에게 통지한다. 단, 사안의 긴급성이 있을 경우 단축 가능하다.

제 10 조(위원의 직무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, 의사 진행, 토론 조율, 찬반 표결 지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.
- ②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제 11 조(의사정족수 등)

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2 조(긴급한 업무처리)

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 13 조(위원의 제척 및 회피)

-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
 - 1. 위원 본인,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협회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
 - 2.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
 - 3.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
- ② 제 1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거나 위원장이 제척하여야 한다.



제 14 조(의무사항)

위원회의 위원,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.

- ①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·유포할 수 없다.
- ②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.

제 15 조 (의사록 및 기록 관리)

- ① 위원회 회의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며, 회의 일시, 장소, 참석자, 주요 논의사항 등을 포함한다.
- ② 회의록은 회의 후 14 일 이내 위원들에게 공유하고, 협회 사무국에 보관한다.
- ③ 모든 승인 관련 서류 및 보완요청, 검토기록, 평가서 등은 사무국이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한다.

부 칙(2026. 1. 27. 제정)

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